

# 중등 학생평가 관련 안내

## 1. 학생평가 지원 관련

### ○ 수행평가 최소 반영비율 축소

- 과목별 수행평가 최소 반영비율: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교 자율 결정
- 지필평가 1회 실시 가능 수행평가 최소 반영비율: 40%
- ※ 2021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주요 변경 사항 안내(학교교육과-1889,1890, 2021.2.8.) 참고

### ○ 정기고사 1인 감독 배정 적정 학생수 학교 자율 결정

- 학생 18명 이상일 때도 1인 감독 가능(시행지침 8쪽 관련)
- 원칙적으로 감독관은 교원만 가능(단, 학부모 시험감독 보조 허용)
- 고사기간(일정) 수립 시 밀집도 최소화를 위하여 학년(급) 단위 혼합 고사장 운영을 자제하고,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유휴 교실 활용, 학년별 고사기간, 시험시간 오전/오후 분리 등 탄력적 운영

### ○ 재시험 여부 학교 자율 결정(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)

- 문항오류 등 재시험 사안 발생 시 학교 자율 결정\*
- ※ 재시험·복수 정답·모두 정답·문항 제외 처리 등
- 재시험 및 중요 사안은 교육청\* 제출(시행지침 중 90쪽, 고 94쪽 참고)
- ※ 중학교는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 제출,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 제출

### ○ 보안관리 확인 학교 자체 점검

- 자체 점검 후 내부 결재(시행지침 중 95쪽, 고 99쪽 참고)(교육(지원)청 제출 없음)

### ○ 선행출제 문항 학교 자체 검토

- 학교 자체 검토\*(교육(지원)청 제출 없음)
- ※ 예: 지필고사 전(또는 후) 교과별 검토 후 교과협의록 이상 유무 기록

## 2. 코로나19 관련

### ○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발생 대비

- 확진·격리·의심증상 학생 발생 상황별 처리 방안 마련

### ○ 코로나19 관련 인정점 부여 기준(산출식 포함) 사전 안내(필수)

- 지필평가 시행 전 학생·학부모 안내(미안내 시 민원 발생 우려)

코로나19 관련 상세 내용은 '2021학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출결·평가·기록 가이드라인(학교교육과-2007, 2021.2.9.)'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3. 지필평가(정기고사) 관련

### ○ 평가 관련 부적정 사례 예방 자체 연수

- 지필평가 실시 전 문항오류, 시험관리오류, 문항전제 등 악영향 성찰

- 문항출제오류 예방: 문항출제원칙 준수, 문항오류의 악영향 성찰 등
- 시험범위오류 예방: 홈페이지, 유인물 등으로 전과목 시험범위 안내
- 시험관리오류 예방: 오류문항 적절한 안내방법 선택, 시험종료후 답안지 수거

- **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예방 교육**(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라 학기 1회 이상)
  - 교원, 학생/학부모(가정통신문 대체 가능) 대상 실시
- **OMR카드 수정테이프 허용 시, 학업성적관리규정 명시 및 보완대책**
  - 서술형 답안을 OMR카드에 작성하는 경우 수정테이프 허용 요구 증가
  - 변경 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하고, 보완대책\* 수립
    - ※ 수정 부분 감독관 날인, 수정문항 작성 후 감독관 날인 등
- **시험지·답안지 보안관리 책임자 명료화**
  - 행정직원 단독 시험지 인쇄 금지(교감, 부장교사 등 입장 필수)
  - 성적처리 단계(OMR카드 리딩 등)에서 교사 이외 업무수행 금지
  - 고사 전 시험지 및 성적처리 전후 답안지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
- **학생 답안 표기 오류(밀려쓰기 등) 최소화**
  - 사전 교육(서답형·서술형 답안지 형식, 표기 연습 등)으로 최소화
- **서답형(서술형 포함) 부분점수 채점기준 명료화**(시행지침 6쪽 관련)
  - 예상하지 못한 학생 답안(유사답안, 부분정답)이 있을 경우 채점기준 수정

[참고] 『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』 6쪽  
 사. ...(중략)... 채점기준표(답안, 유사답안, 부분점수 등 점수 부여 방법 등)을  
 완전하게 갖추어 정확한 채점이 되도록 한다.  
 아. 서답형 문제는 문항정보표에 문항별로 채점기준을 명시하되, 문항당 배점  
 을 다양화하고 부분점수 부여에 유념한다.

- **개인정보 보호**(시행지침 9쪽 관련)
    - 학생 본인에게만 지필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확인
  - **이의신청 기간 운영**(시행지침 공통 9쪽, 중 89쪽, 고 93쪽 관련)
    -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(교과협의회 권장) 적절한 조치
- #### 4. 수행평가 관련
- **과제형 수행평가 금지**(2020학년도부터 적용, 시행지침 1쪽, 10쪽 관련)
    - 정규교육과정 외에 수행한 결과물에 대한 점수 부여 금지
  - **수행평가 적절성 검토**
    - 내용 타당도, 수행 분량 등(부적절할 경우 민원 발생 우려)
  - **단기간 내 집중 실시에 따른 학생의 평가 부담 고려**
    - 수행평가 과목수 과다, 평가 시기 집중에 따른 과도한 부담 우려
    - 수행평가에 따른 학생의 부담 정도 검토(권장, [붙임] 자료 활용)
  - **교과별 수행평가 계획 준수**
    - 안내한 평가계획과 다르게 실시할 경우 민원 발생 우려
    - 평가계획과 다르게 실시할 경우 사전 평가계획 수정·결재 후 안내(필수)
  - **수행평가 채점기준 명료화 및 일관성 유지**
    - 불명확한 채점기준으로 교사의 주관에 의한 편파적 채점 금지
    - 동일학년 동일과목인 경우 동일한 평가 내용·방법 적용
  - **태도 평가 지양**(시행지침 중72쪽, 고76쪽 관련)
    -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과목 내 정의적 영역 관련 평가만 가능